

신청접수번호 : m-RAPA-1706-04-02-301 호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1. 공사내용	
가. 공사명	(SKT)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
나. 공사 장소(주소)	48514 부산 남구 황령대로 504 (대연동, 대연비치아파트) 외 1필지
다.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 V ), 건축물(    ), 도시철도(    )
라. 옥외 안테나 설치 위치	102동, 104동, 105동, 107동 옥상층 / 110동(주민공동시설) 옥상
마. 중계장치 설치 위치	옥상층-102동, 104동, 105동, 107동, 110동(주민공동시설) 지하층-103동 지하1,2,3층 PIT 내
바.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최근접
사. 전원단자 위치 (용량 등)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최근접 (4Kw/220V/단자3개 이상)
2.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공동주택의 경우)	모델하우스 및 E-카달로그상 공개

※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제4항)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17년 07월 11일

주식회사 지에스에이건축  
사사무소



대표 김영 (인)

이동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협회

